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17911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심사경과   |
|----------------------|---------|-------|-------------|--|
| 산림조합법<br>일부개정<br>법률안 | 2200312 | 김선교의원 | ‘24. 6. 11.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br>(‘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br>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br>심사소위원회 회부<br><br>-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br>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4.9.12.) 상정,<br>제안설명, 축조심사<br><br>-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br>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br>제안설명, 축조심사 |
|                      | 2212939 | 윤준병의원 | ‘25. 9. 12.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br>(‘25.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br>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br>심사소위원회 회부<br><br>-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br>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br>제안설명, 축조심사  |

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  
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의원이 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  
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  
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  
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  
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38조제1항).

나.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함(안 제32조제5항).

다.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6).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중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임인 조합장”을 “조합장”으로 한다.

제60조의6 중 “발행·모집”을 “발행·모집·매입소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상임 조합장으

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 법 시행 이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 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생략)</p> <p>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u>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u>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생략)</p> <p>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상임인 조합장</u>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p> | <p>제32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br/>-----<u>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한다)</u>-----<br/>-----.</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8조(임원의 임기) ① -----<br/>-----<br/>-----<br/>-----<u>조합장</u>-----<br/>-----<br/>-----<br/>-----.</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p> |

|  |  |
|--|--|
| <p>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br/>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u>발행</u><br/><u>·모집</u> 등 그 밖에 필요한 사<br/>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밖의 사항) -----<br/>-----<u>발행</u><br/><u>·모집·매입소각</u>-----<br/>-----<br/>-----.</p> |
|--|--|